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51

발의연월일: 2021. 5. 25.

발 의 자: 김성주・이용빈・이상헌

임호선 · 홍성국 · 신영대

박상혁 · 김민석 · 양정숙

박홍근 · 최혜영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는 사회복지관의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

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을 "사업·인력 기준"으로 한다.

-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 하는 사례관리
-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 등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	①
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u>지역</u>	<u>지역</u>
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	의 사업
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	
<u>업</u> 을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
	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
	<u>스 제공</u>
<u><신 설></u>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
	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u><신 설></u>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
	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
	교육 및 조직화
<u><신 설></u>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요구되는 사업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u>4</u>
·운영· <u>사업</u> 등에 필요한 사	<u>사업·인력 기준</u>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